

【 주간 이슈 】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김경환 전문연구위원 ·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이 2010.9.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동 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마련,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또한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모호한 법 규정과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법 시행 이후 TM, CM, DM 등의 직판회사는 전화나 이메일을 거부하는 소비자가 많아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온라인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은 관련 법제의 기틀을 새로이 정비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향후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동 법안의 제정 시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대되어 중첩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 또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주체로부터의 단계별 동의수령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규제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동 법률 도입 시의 혼란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산업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1. 논의 배경

- 최근 컴퓨터와 통신기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며, 이에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률들이 제정·시행되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 및 분야별 필요성에 따라 각기 이에 상응하는 개별 개인정보보호법률이 제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분야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하에서는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표 1>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 분야 | 주요 법률 | 관련 법률 | 비밀준수규정 |
|------|---------------------------|---|------------------------------------|
| 공공행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통계법 | ·변호사법 ·법무사법 ·세무사법 |
| 정보통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외국환거래법 |
| 금융신용 |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공증인법 ·은행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
| 의료 |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공인중개사법 |
| 교육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 ·형법 제317조 |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2, p.36.

- 이에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필두로 다수의 법안들이 제안되었으나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그러나 금번 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따른 경각심의 제고에 힘입어, 2010.9.30.자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의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3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기관법 개정(안)」 10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시함.
-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체계나 자구수정 정도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될 예정이고,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머지않아 개인정보보호 규제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일본의 선행 사례를 살펴보고 동 법안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2.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확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안 제2조·제7조·제8조)

-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을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이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킴.
-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개인정보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을 설치함.

나.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기준 마련(안 제15조~제22조)

- (수집·이용)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수 정보 이외의 선택적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그 수집출처와 처리목적을 알려 주어야 함.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동의 시의 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그 사유별로 각각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 (목적 외 이용 금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다.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강화(안 제23조~제28조)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
 - 온라인상 회원가입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인증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 (민감정보) 사상, 신념, 정당 가입 여부, 건강, 성생활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현저히 큰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 (업무위탁)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 주어야 함.

○ (영업의 양도·합병)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전하려는 사실과 이전받는 자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안 제29조~제34조)

□ (안전조치의무 등)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

□ (영향평가제도) 개인정보파일의 구축·확대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큰 사유의 경우 영향평가수행 의무화

□ (유출사실의 통지·신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안 제35조~제39조)

□ (열람·정정청구 등)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함.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지체없이 응해야 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나 제3자의 생명·신체상 중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

□ (손해배상책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바.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안 제40조~제57조)

- (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

- 또한 피해가 대부분 대량·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

- (단체소송제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동일·유사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정보 단체소송제도를 도입

- 다만, 단체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분쟁조정 거부나 조정결과 불수락을 요건으로 하고,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소송으로 제한

3.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사례

- 우리나라와 유사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함)」 등 5개 법률이 2003년 5월에 제정되어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으며, 통합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사후삭제의 원칙(opt-out)을 견지

- 또한 동 법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개인정보, 개인데이터, 보유 개인데이터의 3가지로 구분하고 그 종류에 따라 법적 보호 의무를 달리하고 있음.

- 동 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그 목적을 공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면 되고 반드시 동의를 수령할 필요는 없음.(제16조, 제18조)

-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그 목적을 특정하여야 하며, 특정 목적과 부합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

- 또한 그 이용 목적에 대해서는 상세히 명시하여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예컨대 “사업활동을 위해”, “고객님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등의 추상적인 목적의 경우 특정된 것으로 보지 않음.

<표 2>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
|---------|---|---|
| 정의 |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정보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
| | 개인데이터 | 검색가능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구성하는 정보이며, 컴퓨터정보뿐만 아니라 매뉴얼 정보도 포함됨. |
| | 보유 개인정보 | 개인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개시, 정정 등의 권한을 가진 개인데이터로 되어 있음. |
| | 개인정보 취급사업자 |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정부·공공단체 등과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5천건 이상을 초과하는 자 |
| 사업자의 의무 | - 목적 외의 이용에는 본인 동의 필요 (제16조) | |
| | - 부정취득 금지 (제17조) | |
| | - 안전관리조치 마련 (제20조) | |
| | - 제3자 제공 시 본인 동의 필요 (제23조), 다만 법령에 기초한 경우는 예외 | |
| | - 본인이 동의한 방법으로 공시 (제25조) | |

□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있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제23조제1항), 사후삭제의 원칙과 더불어 폭 넓은 예외 또한 인정하고 있음.

- 정보주체의 정지요구권 부여를 전제로, 일정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었을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23조제2항)
- 또한 업무위탁, 사업승계 및 공동이용의 경우에는 개인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를 제3자로 보지 않음으로써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면제함.(제23조제4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는 법제상의 조치 등에 대해, 그리고 제8조에서는 지방공공단체 등에의 지원에 대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들을 근거로 각 부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금융청에서는 「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무가이드라인 실무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협회에서도 개별적으로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모호한 법 규정 및 하위 지침 등으로 이해당사자들의 법률에 대한 과민반응과 이해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법 시행 이후의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학교·회사·단체 등이 회원명부나 비상연락망 등의 작성·배포를 금지하는 사례가 법 시행 후 만연하여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함.
 - 2005년 4월 발생한 JR탈선사고 당시 부상자 명단을 일일이 당사자의 허락을 받은 뒤 발표함으로써 유가족이나 부상자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함.
- 또한 법 시행 이후 TM(telemarketing), CM(cyber marketing), DM(direct mail) 등의 직 판회사는 전화나 이메일(e-mail)을 거부하는 소비자가 많아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온라인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4.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가. 보험회사에 적용할 개인정보보호법률의 다기화 심화

- 현재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영업형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정책당국)되고 있으며¹⁾,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험계약체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²⁾³⁾.
- 이에 더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다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은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외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대되어 그 중첩성이 보다 심화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안)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표준사업방법서에서도 보험계약내용의 교환을 위해 신용정보법에 근거한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험계약체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제2조제1항제3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오고 있음.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중첩적용된다는 의견도 있음.(정성구, “현행 소비자 금융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 고찰”, 「BFL」 제2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7.11, p.77.)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전부 적용 배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안)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정책당국은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그 적용법규의 혼란으로 인해 불법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령이나 보험업감독규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적용법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일본의 경우처럼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에서는 통신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계법령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까지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혼란을 야기

□ 보험회사 차원에서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들을 고려하여, 나름대로의 지침을 제정·운영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함.

- 정부당국이나 금융당국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포괄적일 수 밖에 없으며, 실무상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보험회사의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임.

나.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 수령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의 취급단계별로 보호기준을 명시하고 그 조치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수령과 관련된 표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에게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전술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표 3>의 대쉬(“-”) 해당 부분)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규제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임.

□ 보험회사는 먼저, 동의사항을 필수 사항과 선택적 사항으로 구분하고, 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령하지 않았던 개인정보 수집동의도 수령하여야 할 것임.

- 개인정보 수집동의의 경우 신용정보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신용정보법상으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안)상의 동의수령의 예외로서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있기 때문임.
 -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면제하고 있지만, “체결 및 이행”의 범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지속적 계약거래인 보험거래에서는 그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이용목적은 공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고지만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더불어 식별정보의 경우는 할인할증을 적용, 중복계약 확인 및 보험금 지급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 및 이용에 제한을 받을 경우 보험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도 있음.

<표 3> 법안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기준 비교

| 구분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안) | |
|---------------|---------------------------|--|---------------------------------|--------------------------------|
| 수집 | 일반정보 | - | 동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외) | |
| | 민감정보 | 수집금지 예외(질병정보): 동의 | 수집금지(원칙) 예외: 동의, 법규정 등 | |
| | 식별정보 | - | 수집금지(원칙) 예외: 동의, 법규정 등 | |
| 식별정보 외 회원가입방법 | - |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의무화 | 의무화 | |
| 이용범위 | 상거래관계의 설정·유지 등의 판단목적 범위 내 | 수집(동의)목적 범위 내 | 수집(동의)목적 범위 내 | |
| 타인 제공 | 일반정보 | 동의 (채권추심 등의 목적, 타법률규정 등 제외) | 동의 (요금정산, 타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 |
| | 식별정보 | 동의(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인 경우 제외) | - | |
| | 업무위탁 시 | 동의, 금융위 통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의 제외) | 동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외) | 공개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는 고지) |
| | 영업양도 시 | 동의 등 면제 | 통지 | 통지 |
| 동의사항구분 | - |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 |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 | |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시행 시 보험회사는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의 단계별 동의수령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해 나갈 필요도 있음.

다.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모든 업무분야로 그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동 법안에서 도입예정인 신규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동 법안에서 새로이 도입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제도 등 임.
- 또한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강화는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운영해오던 고객정보의 구축 업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시행으로 개인식별정보나 민감정보 등 일부 고객정보는 집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집적할 경우에도 많은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더불어 개인정보의 유출 시에는, 기술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회사가 사회적인 비난에 따른 평판리스크의 하락은 물론, 더 무거워진 손해배상책임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도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보험회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등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 규제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동 법률 도입 시의 혼란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산업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보험회사 내에는 보험고객정보뿐 아니라 임직원정보, 사내 동호회정보, 주주 관련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존재하고, 이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이므로, 일본과 같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비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임. KiRi